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산업 분야 지침서: 운동 시설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 사항은 실행에 앞서, 지역 내 공중 보건 수요 급증, 고위험군 인구, 접촉자 추적, 그리고 검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 준비 정도를 포함한 인구 10 만명 당 사례, 검사 결과 양성 반응 판정률 및 지역 전염병 데이터 검토후 카운티 공중보건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책임관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택격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확산을 저지하도록 명령을 발효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은 아직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감염에 따른 질병은 매우 경미한 증상(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에서부터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염 고위험군은 감염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또는 폐 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기저 질환자로, 감염 시 입원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경우, 감염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증상의 잠복기를 포함하여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사회기반산업 종사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 산업분야 별 또는 직업 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자 수와 감염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넓은 범주의 근로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감염되거나 전염의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이 다발적인 발발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으로는 병원, 장기 요양 시설, 교도소, 식료품 생산지, 창고, 육류 가공 공장 및 식료품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택격리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합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 실천 사항입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물리적 안전 거리를 유지합니다,
- ✓ 근로자들(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서)과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 손을 자주 씻고,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 ✓ 해당 내용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 예방 계획안의 기타 사항에 대해 근로자들을 교육합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지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식별하고, 감염자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개입하는 한편,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감염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본 지침서는 운동 시설(fitness facilities)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참고: 운동 시설 내의 놀이터는 해당 시설이 변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의 변별적 또는 전체적인 재개 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 회복성 로드맵(COVID-19 Resilience Roadmap)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지침은 주간 아동 보육 시설 또는 보육 프로그램 서비스, 청소년 캠프, 단체 경기 또는 접촉 스포츠, 학교 및 교육 활동 및 기타 공공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간 캠프, 야외 레저 활동 및 보육 관련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회복성 로드맵(COVID-19 Resilience Roadmap)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공원, 공지 및 운동 경기장을 이용하는 농구, 야구, 축구 및 미식축구와 같은 대부분의 조직화된 활동이나 단체 스포츠는 동일한 세대의 가구원 또는 거주 동거인이 아닌 코치 및 운동 선수들이 밀접한 거리에서 참여하게 되고, 이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활동과 스포츠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법령, 규제 또는 단체 교섭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철회하거나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며, 카운티 공중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은 바,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발효중인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 나과 같은 공중 안전 및보건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지방 정부 발효 명령이 변경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지침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 (Cal/OSHA)의 보다자세한 안전 및 건강 관련 지침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착용

지난 6월 18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은 보다 광범위한 <u>안면 가리개 지침서</u>를 발효하여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장소 및 직장 환경에서 일반인과 근로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근무지 또는 근무지 외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근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업무/근무;
- 업무 공간 안에 일반 대중 고객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이 방문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근무;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공간에서 하는 업무/근무;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근무하거나 보행하는 업무/근무;
- 타인(본인의 가구원 또는 거주 동거인인 아닌 사람)과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업무/근무
-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대중 교통 또는 보조 대중 교통 차량, 택시 또는 개인 차량 교통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일체. 탑승한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해당 규칙 관련 요구 사항 및 면제 사항 전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u>지침서</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하여 안면 가리개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정책을 별도로 고안해야 합니다. 타인과 빈번하게 접촉해야 하는 근로자가 의학적 사유로 안면 가리개 착용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대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탈착용이 비제한적인 대안용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면보호대 쉴드 하단에 드레이프 부착되어 있는 보호구 등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체는 <u>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u> 지침서에 기술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u>지침서</u>에 따라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하여 비착용을 이유로 배재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해당 면제 사항에 적용되는 고객, 의뢰인, 방문객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근무지 특성 별 계획안

- 모든 시설에서 근무지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 계획안을 수립하고, 모든 근무 영역 및 업무 별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각 시설별로 계획안을 구현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근무지 특성 별 계획안(Workplace Specific Plan)를 <u>캘리포니아 공중 보건</u>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지침서와 통합하고 여기에 이에 면제 대상 관리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공중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파악하여, 근로자 또는 이용 고객 중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발발 시, 해당 정보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 및 근로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교육하고 소통하며, 근로자들 및 대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공합니다.
- 근무지의 계획안 준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선 사항을 보완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감염 경로에 업무 관련 요인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추가 감염 사례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합니다.
- 근무지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u>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u> 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실행 안(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한 접촉(15분 이상 6피트(2미터) 이내에 있었던 개인)을 한 개인들을 파악하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판정 근로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개인들을 격리하는 조치 단계를 실행합니다.
- 이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비 준수 시, 근무지 내 감염자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시 휴업이나 영업 제한 대상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관련 주제

- <u>코로나바이러스(COVID-19)</u>에 대한 정보, 감염 확산 방지 방법,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기저 질환 건강 상태 관련 정보.
- 체온 및/또는 증상 확인을 포함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선별 검사.
-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기존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인후통, 울혈, 콧물, 메슥거림,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은 <u>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u>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 o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후, 격리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 o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여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다고 (가령, 격리 중인 상태) 간주되는 경우.
-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후, 처음 감염 증상이 발발한 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고, 감염 관련 증상이 호전되어 지난 72시간 동안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해열제 복용없이 정상 체온을 회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았으나 감염 증상이 없는 근로자는 최초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 양성 진단 이후 10 일이 경과한 후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흉부 압박감이 지속되거나, 혼동 상태, 입술이나 얼굴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u>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u>에 게재되는 최신 정보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u>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u>에 따라 개수대나 손 씻는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 초 동안 비누로 손을 문지르며 (또는 최소 60% 에탄올 함량(권장) 또는 70% 이소프로판올(감독 하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함량 손 소독제 사용) 자주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
- 근무 시간 내 그리고 근무 외 시간 모두에 타인과 신체적 안전 거리 유지의 중요성 (이하 신체적 안전 거리 항목 참조).
- 올바른 안면 가리개 착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하고 있는 개인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며 개인 보호 장비 (PPE)가 아닙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하고 있는 개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 실천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 근로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또는 착용 상태를 조정하기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 코, 그리고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되며, 매 교대 후에 세탁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 <u>캘리포니아 공중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지침서</u>에는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면제 상황, 그리고 고용주들이 안면 가리개 착용을 집행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 근무 규정 및 실천 사항을 규정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또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근무하는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비품 및 PPE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자택 격리 기간 동안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권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으로 <u>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률(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u>에 따른 근로자들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u>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유급 휴가와 직원 상해 보험 지원 정부 프로그램</u> 관련 정보, 그리고 주지사의 <u>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제 N-62-20호</u>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명령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발 근로 관련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 혜택 권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통제 수단과 선별 검사

- 모든 근로자들의 각 근무조 업무/근무 시작과 납품업체 또는 계약 업체 관련자들의 시설 출입에 앞서, 체온 및/또는 감염 증상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체온/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이 타 근로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근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의 적절한 대안으로,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자가 선별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조 출근을 위한 외출 전에 선별검사를 수행하고 상기 직원 교육 주제 항목에서 기술한 <u>질병통제예방센터(CDC)</u>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외출을 삼가고 자택에 머물도록 독려합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모든 필요 장비를 제공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업무/근무 특성에 따라, 안구 보호 및 장갑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타인들의 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이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은 근무지 도착 시, 각 운동 시설 이용 회원과 운동을 한 후, 얼굴 가리개를 만진 후, 화장실 사용 후, 그리고 퇴근 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실내 환경의 경우,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은 샤워를 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자택에서 샤워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지침은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이 실외에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 타인들과 최소 6 피트(2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비착용을 허용합니다.
- 가능한 경우, 시설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십시오.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착 예정 시간 24시간 전에 예약 고객에게 연락하여 예약 시간과 예약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약 고객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운동 시설 이용은 다른 이용 고객 또는 운동 시설 근로자들에게 건강 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모바일 앱,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고객의 시설 도착 시 체온 및/또는 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캘리포니아 공중보건사무국(CDPH) 지침에 따라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이용고객들에게 시설 이용 전 안면 가리개를 소지하도록 당부하고, 안면 가리개가 없는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구비합니다. 운동 시설은 반드시 모든 출입구와 잘 보이는 장소에 눈에 잘 띄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실행 안(프로토콜)

- 이용객 대기 접수 구역, 개인 옷장,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운동 시설의 기존 청소 및 소독 실행 안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 실행 안을 수정합니다. 운동 시설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o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표를 계획하고, 영업/운영 시간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매일 정기적이고 철저한 청소 및 소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 o 접수 대기 구역 및 로비 공간, 탈의실, 개인 옷장, 휴게실과 같이 다수가 모이고 이용하는 공간과 계단, 계단 통로, 승강기, 난간 및 승강기 제어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구역을 매일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 o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은 개인 운동 기계 및 장비, 카운터, 자동 판매기, 문 손잡이, 손 씻기 시설 등을 포함하여 자주 소독합니다.
 - o 직원 근무조 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청소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근무 시간 동안 청소 업무를 직무의 일부로 배정합니다.
 - 근로자들 전체가 다목적 세척제 및 소독제 사용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u>질병통제예방센터</u> (CDC) 청소 및 소독 지침서을 모두 준수합니다. 청소 제품 사용에 있어 캘리포니아/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 요구 사항 및 제조업체의 제품 사용 설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 o 근로자들이 소독하는 공간의 환기(공기 흐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기타 협소한 공간을 청소하는 경우,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닫히지 않도록 지지대로 고정합니다.
 - 난방, 환기, 공기 조절(HVAC) 흡입구를 매일 청소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비상 구급함을 공급하여, 살을 베이거나 긁히거나 또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피부를 감쌀 수 있는 반창고나 붕대 또는 기타 물품으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창고나 붕대는 자주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공급합니다.
 - 시설 이용 고객들이 환경미화원 또는 비품 관리인과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방문객들이 해당 실천 안을 유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구현합니다. 근로자들이 앙갚음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o 청소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소 용역 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합니다.
- 출입구, 운동기구, 운동 공간, 탈의실과 개인 옷장 및 기타 지역에 손 소독제 및 소독 용 물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청결 용품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이용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예: 접수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개인용 비품으로 공급합니다.

- 이용 고객들에게 소독 용 물티슈를 공급하고 개별 운동기구, 매트, 그리고 장비를 사용 전후에 소독하도록 당부합니다. 사용한 물티슈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씌운 비접촉 방식 휴지통을 운동 시설 전체에 비치하고 확인합니다.
- 이용 회원들이 운동 후 이용한 장비를 닦지 못하거나/소독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 후 이용한 기구/장비에 "청소 준비"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올려 놓아 다른 회원이 사용하기 전에 장비를 소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 이용 고객들이 운동 소품이나 주변 기구(예: 운동 용 밴드, 로프, 매트, 폼 롤러 등) 사용시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시스템(check-out system)의 구현을 고려합니다. 사용 후 반납한 품목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절차를 구현합니다.
- <u>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u>에 따라 장기간 폐쇄하였던 시설의 상수/식수를 안전하게 이용하여 <u>악성폐렴(Legionnaires' disease: 에어컨에 의해 전파되는</u> 세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폐렴) 및 기타 수질 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 가능한 비접촉 방식, 자동 정수기를 비치하여 이용 고객들이 개인용 물통이나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일회용 종이컵을 비치하도록 노력합니다. 근무자들이나 이용 고객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마시는 통이나 병, 또는 컵의 입이 닿는 부분이 정수기 수도에 닿지 않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비접촉식 정수기 구비가 여의치 않은 경우, 근무자들이나 이용 고객들이 식수/음수대의 배수 작동 조작 전후 적절하게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당부합니다.
- 이용 고객들이 개별 수건과 매트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이용 고객들에게 수건이나 개인 위생 제품을 편의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 시설에서 수건, 닦개 헝겊, 또는 기타 세탁된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해당 품목에 관하여 <u>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u>을 준수합니다. 사용 후 반납한 수건이나 기타 비품을 밀폐 보관하는 수거함을 비치합니다. 수거한 비품은 상업 용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화씨 160도 이상의 온수에 최소 25분 동안 담갔다가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적절한 세탁을 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이 세탁한 비품은 청결한 공간에 덮개를 씌워 보관합니다. 사용한 비품이나 세탁물을 처리하는 근무자들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이용 고객을 위한 편의 용품과 시설은 잡지, 서적, 셀프 서비스 식수대(비접촉 방식 제외)를 포함하여 접수 대기 구역에 비치한 모든 기타 비품과 함께 회수하여 운동 시설 내 다른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접촉 공간이나 공유하는 물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 옷장 공간에는 비필수 화장대나 용품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은 악수, 주먹이나 팔꿈치 맞부딪히기 및 기타 신체적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 간에 최대한 도구나 기구, 전화, 전자 제품

및 사무용품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각 근로자에게 개별 근무 공간과 비품을 배정합니다. 절대로 개인 보호 장비(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업장에서 소독 제품을 선택할 때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비 안전 승인을 받은 환경 보호국 (EPA)-승인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 당 5 큰 숟갈 분량), 또는 표면 청소 용액으로 알코올 함량이 최소 70%인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학 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제조업체의 사용 설명 지시에 따라, 환기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합니다. 청소제품이나 소독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제품 사용에 필요한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이 권장하는 <u>천식 방지 청소 방법</u>에 따라,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가능한 경우, 바닥 청소 시 빗자루로 쓸거나 기타 병원체를 공기 중에 분산시키는 청소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고성능 미립자제거 여과기(HEPA)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이동식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가능한 경우, 건물의 공기 정화 장치는 최고의 효율성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의 외부 공기 유입 및 환기량을 증대시키는 기타 수정 안을 고려합니다.
- 운동 시설 전체에 안면 가리개 착용과 자주 손 씻기 실천의 중요성과 같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안내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신체적 거리 두기 지침

-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들은 최소 6 피트(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물리적 칸막이 또는 시각적 신호(예: 바닥 표시, 컬러 테이프 부착, 또는 접수 구역에서 체크인하는 동안 또는 장비 사용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근로자 및/또는 이용 고객이 서 있어야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비 간 간격을 최소 6피트(2미터) 이상 확보하고, 러닝 머신 및 기타 호흡량이 많은 유산소 운동 장비 간 간격은 보다 넓게 확보하여 비치합니다. 장비들을 "X"자 형태로 배열하면 최대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칸막이를 이용하면 이용 고객과 운동 공간을 격리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안내 데스크 구역은 가능한 경우, 안내하는 근로자와 이용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플렉시 유리(Plexiglas)나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이용 고객이 접수 구역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가능한 경우, 비접촉 가상 체크인 도구/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시설의 비핵심 활동은, 소매점 운영, 스파 서비스, 보육,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 및 음식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운동 시설에서 이러한 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회복성 로드맵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의학적으로 취약한 인구는 고령자를 포함하여, 예약제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시간대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 시설의 규모에 따라 최대 수용 규칙을 평가하고 수용 계획안을 개발하여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수를 제한하여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 내 이용 고객들이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의 개별 통제 수단과 선별 검사 항목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인터넷 예약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대기하는 이용 고객 인원과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이용 고객만 시설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용 고객이 접수 대기 구역에서 대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o 시설 전체에서 시각적 신호와 안내 표지로 일방 통행 이동 경로를 안내합니다.
 - o 공동 사용 가구를 철거 및 회수하고/또는 회원 라운지 구역 출입을 통제합니다.
 - o 개인 옷장 공간의 이용 가능한 사물함 간 간격을 두어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합니다.
 - o 모든 장비와 기기는 최소한 6피트(2미터) 간격으로 비치하거나 일부 비치된 장비를 제거하여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합니다.
 - 운동 지도 강사가 최소 6피트(2미터)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강습을 조정합니다.
 - 단체 강습 일정을 조정하여 수강자 간 간격을 최소 6피트(2미터)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또는 강습을 실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가능한 경우, 실제 농구장 크기의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운영합니다. 단체 강습은 신체적 안전 거리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개인 간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6피트(2미터)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서 밀접하게 접촉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단체 스포츠 행사, 조직화된 기관/도시 별 대항 경기, 농구 픽업 게임 또는 조직화된 육상 경기와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합니다. 시설 내에서 가상 회의나 소규모로 회의를 진행하는 옵션을 통해 신체적 안전 거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 이용 고객 및 다른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촉하는 직무 옵션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수정을 고려합니다 (예: 행정 관리 업무 수행을 재택 근무제로 전환).

- 직원 휴식에 시간 차를 두어, 고용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안전 거리 실행 안을 실천합니다.
- 근로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탁자/의자 간 간격을 확보하는 한 편, 휴식 시간에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실외에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간격으로 좌석과 그늘 천막을 제공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공동 화장실 및 샤워 시설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 운동 시설은 개인 옷장 공간과 샤워 시설을 하루 수 차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는 근무 직원 수와 기타 수용 인원 및 자원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용 화장실 시설과 개인 옷장 공간은 환경보호국(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매일 수 차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들의 손이 닿는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그리고 전등 스위치와 같은 물체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화장실 시설과 개인 옷장 공간의 청소 일정표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청소 일정을 출입문에 게시하여 이용 고객이 화장실 및/또는 개인 옷장을 사용할 수 있는/없는 시간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시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 점검표 또는 확인 검사 시스템 사용을 고려하여 청소 빈도를 확인합니다.
- 샤워실과 개인 옷장 공간 사용은 칸막이가 있거나 신체적 안전 거리 요구 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게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칸막이 설치 또는 적절한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휴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위생 시설은 항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여분의 비품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분의 비누, 종이 타월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비접촉 방식 기기를 설치하여, 가능한 경우, 동작 인식 세면대와 수도, 비누 자동 분사기, 소독제 자동 분사기, 그리고 종이 타월 자동기를 설치합니다.
- 다중 칸 화장실의 문은 비접촉 방식 장치를 사용하여 문 여는 도구, 또는 자동문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손잡이나 문 조작 장치에 손을 대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문 옆에 휴지통을 비치하여 문 조작 시 사용한 종이 타월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입, 대피, 비상 장비 또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준하는 합리적인 편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와 장소에 쓰레기 수거 용기를 비치합니다. 휴지통 청소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세면대는 운동 시설 이용 고객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세면대 표면에 빗이나 기타 물건이 직접 닿도록 두지 않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개인 용품을 작은 소품 가방에 보관하여 화장실이나 개인 옷장 공간의 다른 표면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벽/문 걸이 방식의 표지판을 포함하여 화장실 내에 게시합니다.



수영장/물놀이 장소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 수영장 또는 분수 패드가 있는 운동 시설은 <u>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u>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절히 청소하고 소독하여 이용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수영장에 물 미끄럼대, 워터 라이드 또는 기타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 시설은 해당 활동이 재개가 허용될 때까지 관련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수영장 자체는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사우나, 증기 욕실, 그리고 온수 욕조는 해당 활동 재개가 허용될 때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들이 물속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구역에서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착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당부합니다. 헝겊 안면 가리개를 젖은 상태에서 착용하면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면 가리개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로 만지거나 줍지 않도록 합니다.
- 적절한 소독 수준(유리염소 1 ~ 10ppm 또는 브롬 3-8ppm)과 폐하(pH) (7.2-8)를 유지합니다.
- 시설의 물놀이 장소를 설계한 회사나 엔지니어의 자문을 구하여 <u>환경보호국(EPA)</u> <u>승인 소독제 목록 N항</u>에 열거된 소독제 중에 시설의 물놀이 장소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확인합니다. 제품 보관 시에는 <u>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u>에 따라 어린이의 손이 닿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청소나 소독을 해야 하는 가구와 장비(예: 라운지 의자)는 이미 청소나 소독을 마친 가구와 분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현합니다. 사용 후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하는 장비와 청소나 소독을 마친 장비를 각각 다른 용기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각용기에 라벨을 부착합니다.
- 가능한 한, 이용 고객들이 각자 개인용 수건을 지참하여 운동 시 사용하도록 독려합니다. 시설에서 수건을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수건을 세탁합니다. 가장 따뜻한 적정 수온에서 세탁한 후 세탁물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수건 관리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흔들거나 털지 않고 최소한의 손질로 마무리합니다.

- 사람들이 특히 청소나 소독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얼굴에 닿는 물품(예: 물안경, 코집게 및 스노클링 기구)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 이용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시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킥보드, 풀 누들 및 기타 부양 기구를 포함한 물품들은 최대한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물품은 매번 사용 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실내 물놀이 장소의 경우 창문과 문을 열어 가능한 한 자주 환기시키고 선풍기나 환풍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외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단,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 또는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창문과 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체적 안전 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영장 주변의 갑판(deck)나 주변의 다른 구역의 배치를 수정합니다. 가령, 비치되어 있는 라운지 의자 등을 치우거나 테이프 등으로 이용 제한 구역을 표시하여 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신호 또는 안내선(예: 물이나 의자에 이용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갑판에 탁자를 비치하는 등), 또는 시각적 신호(예: 갑판, 바닥 또는 인도에 테이프로 표시) 및 표지판을 게시하여 근로자들, 이용 고객들 및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 안과 물 밖에서 서로 6 피트(2미터)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근로자들과 이용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이 불가피하고 신체적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플렉시 유리(Plexiglas)나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 수영장을 예약제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모색을 고려합니다. 개별 왕복 수영자들은 레인 전체(풀 레인)를 예약하고 개인 가족 단위 이용자들은 하프 레인을 예약하도록 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인명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인명 구조원들에게 이용 고객들의 손 씻기, 헝겊으로 된 안면 가리개 착용 또는 신체적인 안전 거리 유지를 실천하도록 단속 업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속 및 집행은 다른 근로자가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 물놀이 장소는 단체 모임을 장려하는 활동을 삼가고, 수중 휘트니스 강습, 수영 강습, 수영 팀 연습, 수영 대회 또는 수영장 파티 개방 여부는 모임에 관한 지역 정책 요구사항을 유념하여 결정합니다.
- 공원 내 대중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 예방에 관한 보다 자세한 권장 사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중 공중 보건 법규 견본(Model Aquatic Health Co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식 서비스(주스 바, 스낵 바 및 푸드 코너 포함) 및 소매점 운영 관련 추가 고려 사항

- 외식 서비스는 주스 바, 스낵 바 및 기타 푸드 코너를 포함하여 현재 발효중인 명령들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회복성 로드맵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 외식 서비스 구역은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이용 고객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여 테이크 아웃하도록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여 테이크 아웃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대기중인 이용 고객들이 적절한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스낵바와 푸드 코너는 주문한 음식을 미리 배달 용기에 담아 낱개 포장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일회용 식사도구와 식기는 냅킨과 함께 낱개 포장하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구니, 컵 또는 상자에 담긴 식사도구나 식기류를 각자 꺼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음식이나 소매 품목을 주문할 때 전화상으로 신용 카드 결제나 전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독려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도구는 매번 사용 후 물티슈 등으로 청결히 닦았는지 확인합니다.
- 외식업소 및 소매업 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회복성 로드맵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염 취약 인구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시설은 모든 캘리포니아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이 고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변경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